

제28호

행정 명령

뉴욕주 비상 사태 선포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s Act) 362조 및 365조(42 U.S.C §§ 362 및 365, 2021년 8월 2일 미 질병통제센터(United States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국장령에 따른 42 C.F.R. § 71.40 시행 규정)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며 전염가능한 질병이 존재하는 곳에서 온 사람에 대한 공중 보건 평가 및 권리 중단 명령(issued a Public Health Reassessment and Order Suspending the Right to Introduce Certain Person from Countries Where a Quarantinable Communicable Disease Exists)**(“42장 명령”)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42장 명령이 캐나다 또는 멕시코(출신국에 관계 없이)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자이며 입국항 또는 미국 국경 또는 해안 국경 인근 국경 통제소 등 분리된 장소로 입국할 수 있었던 자인 "보장받는 비시민"의 입경을 막았기 **때문에**,

42장 명령의 실행 이후에도 인근 지역 또는 뉴욕주 또는 뉴욕시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민자가 지난 수 개월 동안 다수였으며, 뉴욕시의 경우에만 남쪽 국경에서 36,738명의 이민자가 현재 임시 주거 중이며, 2023년 1월부터 이러한 숫자가 12,279명 증가 하였으며, 지난 주에만 추가 1,578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42장 명령이 2023년 5월 11일 만료되며 42장 명령 만료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이 급증하여 뉴욕주 및 뉴욕시 인근 도시에 사람이 몰리고 매주마다 추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임시 주거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뉴욕주 및 기타 뉴욕주 내 지방 정부로서 이민자 수천 명의 주거와 기타 기본적인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도적 요구를 지원할 인프라, 시설, 자원이 부족한 경우 연방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뉴욕주와 뉴욕시에서 쉼터를 찾는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미 존재하는 대규모 인도적 사태를 악화시키고 지방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비상사태를 초래하여 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생명이나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부법 제2-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방 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임박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로써 2023년 5월 9일부터 뉴욕주 전역에 주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 행정 명령은 2023년 6월 8일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행정부법 제29조 제2-B항에 따라, 본인은 공공 보건, 안전 보호가 필요해짐에 따라 2023년 5월 9일자로 뉴욕주 종합 비상 운영 계획(Stat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의 시행을 명령하고, 미국 적십자사에 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지방 정부와 개인이 이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합니다.

또한, 행정부법 제2-B조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본인은 이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법이 앞서 언급한 비상사태로 인해 공중 보건 및 안전의 적절한 대응 및 보호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범위까지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임시 중단하거나 개정합니다.

- 주 재정법(State Finance Law) 97-G장: 재난 위기에 대응 및 복구함에 있어서 음식물, 물자, 서비스,

장비의 구매, 또는 영향을 받은 지방 정부, 개인, 기타 민간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중앙화된 서비스를 공급 또는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주 계약에 추가 작업, 부지, 자금, 시간을 추가하거나 계약을 수주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조에 따른 주정부 운영의 재배치 및 지원을 위한 계약 또는 임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재정법 제112조, 공공건물법; 또는 공공 건물법 제 8조 및 제9조 따른 계약; 또는 주 재정법 제136-a조에 따른 전문 서비스 계약 또는 연방 GSA 일정, 연방 1122 프로그램 또는 기타 주, 지역, 지방, 다중 관할 또는 협력 계약 차량을 통한 상품, 서비스 및 기술 구매 계약,
- 상품, 용역, 기술 및 자재를 표준 고지 및 조달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주 재정법 조항 163 및 경제개발법 조항 4-C.
- 상품, 용역, 기술 및 자재를 표준 고지 및 조달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주 일반 지자체법 103조.
- 부동산 행위와 절차 법(Real Property and Proceedings Law) 제768항 및 제711항, 부동산법(Real Property Law) 제226-c항 및 제232-a항, 다주거지법(Multiple Dwelling Law) 제4항의 세부조항 7, 8, 9, 10 및 13, 그리고 기타 법이나 규정은 해당 법률이 중지 및 수정되지 않으면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단되고 수정됩니다. 이 관계는 주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비상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쉼터 또는 주거가 필요한 개인, 비상사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이상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호텔 소유자, 병원, 비영리 주택 제공자, 또는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기타 임시 주택 제공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들 사이의 것입니다.

2023년 5월 9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